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99호

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(변경)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02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이천휴게소 하남방향)
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내용

① 구분	② 종류	③ 노선 번호	④ 노선명	⑤ 위치	⑥ 면적	⑦ 기점	⑧ 종점	⑨ 주요 통과지	⑩ 총연장 (km)
변경	고속 국도	제37 호선	제2중부 고속도로	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	628㎡	이천시 신둔면 용면리	이천시 신둔면 용면리	이천휴게소 (하남방향)	-

2. 도시계획시설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내용

- 변경없음

3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 :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유부지에 대한 도로구역 지정

4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: 해당없음
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편입면적 (m2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	비고
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	
1	이천시 신둔면 용면리	80-1	답	294	김**	이천시 신둔면 용면리				
2	이천시 신둔면 용면리	77	답	334	김**	이천시 신둔면 용면리				

6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:

- 가. 열람장소

-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(주소 :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 15, 전화번호 : 02-2084-1641)

나. 열람기간 : 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간

7.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

연번	노선명	소재지	변경사항	비고
1	제2중부선 (고속국도 제37호선)	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80-1	도로구역(변경)결정	
2	제2중부선 (고속국도 제37호선)	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77	도로구역(변경)결정	

8. 지형도면 : 공람장소에 비치

-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

※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같음하며,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.